

대통령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4호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u>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u>	제24조(사후관리 대상) ----- ----- ----- ----- ----- ----- <u>.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가. ~ 카. (생 략) <u>타.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u> <u>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u> 파. ~ 터. (생 략) 5. · 6. (생 략) ② · ③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삭 제></u> 파. ~ 터.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